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개정 2019. 8. 28. 규정 제800호

1. 개정사유

- 특수대학원 무논문 학위수여제도 도입에 대한 학칙 개정에 따라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무논문 학위수여제도 운영에 필요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 일반대학원 스포츠코칭학과가 폐지되고 현재 재적생도 없기에 스포츠코칭학과에 대한 조항들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함.
- 강사법 시행으로 강사채용에 관한 사항들은 교학처에서 담당하기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시간강사 위촉 조항을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간강사위촉 폐지 및 시간강사 관한 사항 변경(안 제29조, 제30조)
- 무논문 학위수여 제도에 따른 30학점 이상 이수(안 제34조)
- 일반대학원 스포츠코칭학과 폐지에 따른 조항 수정(안 제4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한국체육대학교 학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TF팀 보고서 의견수렴

라. 붙 임: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개정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학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중 "시간강사"를 "강사, 비전임교원"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중 "교수 업적평가"를 "전임교원 업적평가, 강사 재임용 등의"로 하고 같은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34조제1호가목 단서조항 중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30학점 이상"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료필수 회	등록학기		
인정학기	대학원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1	9학점미만	6학점미만	1학기이상	
2	9학점이상 18학점미만	6학점이상 12학점미만	2학기이상	
3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12학점이상 18학점미만	3학기이상	
4	24학점이상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4학기이상	
5		24학점이상	5학기이상	

제4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학위청구논문"을 "학위논문"으로 하며,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무논문 선택과정 신청자는 30학점 이상 이수함을 말한다.

부 칙(제800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시간강사위촉) ① 전임교원이 담당 할 수 없거나 담당시수 초과 등으로 인한 때에는 시간강사를 위촉하여 수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간강사는 주임교수가 추천한 자를 총장이 위촉한다.	제29조(시간강사위촉) <u>〈삭 제〉</u>
제30조(강의평가) ① 매학기 지정된 기간 내에 당해 학기에 설강된 교과목의 담당 교원(시간강사 포함)에 대하여 강의평가를 실시한다. ② (생 략) ③ 각 대학원장은 강의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교수업적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④ (생 략) ⑤ 시강사의 평가결과는 시간강사를 추천한 주임교수에게 통보하여 시간강사 추천 시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30조(강의평가) ①
제34조(학점의 구분) 원생이 재학 중 수료와 학위취득 및 연구에 필요한 학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이하 "수료 필수학점"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으며, 평균 평점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단, 선수 과목 수강지정자는 당해 선수과목 학점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 가. 석사과정 : 24학점 이상(대학원생은 연구법 6학점 포함, 사회체육대학원생은 연구법 6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12학점 포함, 교육대학원은 전공과목 14학점 및 교직교과 4학점이상을 포함). 다만, 대학원 스포츠 코칭 석사과정은 36학점 이상 나. (생략) 2. ~ 3. (생략)	제34조(학점의 구분)

현 행				개 정 안				
제46조(학기인정) ① 학기의 인정은 다음				제46조(학기인정) ①				
각 호와 같이 인정한다.								
1. 학기의 인정은 수료 필수학점의 취득을				1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가. 석사과정				가. 석사과정				
인 정	수뇨발수 1	학점취득		인 수료필수 학점취득 정				
학 기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등록학기	학 기	대학원	사회체육대학원, 교육대학원	등록학기	
1	9학점미만(12학점 미만)	6학점미만	1학기이상	1	<u>9학점미만</u>	6학점미만	1학기이상	
2	<u> 24학점 미만)</u>	6학점이상 12학점미만	2학기이상	2	9학점이상 18학점미만	6학점이상 12학점미만	2학기이상	
3	<u>18학점이상</u> 24학점미만(24학점이상 <u>36학점미만)</u>	12학점이상 18학점미만	3학기이상	3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12학점이상 18학점미만	3학기이상	
4	24학점이상(36학점이상)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4학기이상	4	<u>24학점이상</u>	18학점이상 24학점미만	4학기이상	
5		24학점이상	5학기이상	5		24학점이상	5학기이상	
 ※ () 안은 대학원 스포츠코칭 석사과정임. 나. ~ 다. (생 략) 2. 3. (생 략) 4. 졸업은 학위논문을 취득하였음을 말한다. 5. 졸업예정이란 논문계획서를 공개발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함을 말한다. ② · ③ (생 략) 					나. ~ 다.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 <u>〈삭 제〉</u> 5			
				부 칙(제800호, 2019. 8.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4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